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59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황정아 · 박용갑 · 김 현
박해철 · 이병진 · 황명선
오세희 · 문금주 · 장종태
김 윤 · 이재관 · 한민수
양부남 · 이재강 · 박지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3)”을 “3) 및 4)”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종전의 4)) 중 “3)”을 “4)”로 한다.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35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30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나) 중 “다)”를 “다) 및 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4)에 따른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 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인공 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생략)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략)

<신 설>

3)

4)

3) (현행과 같음)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4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4) 1)부터 3)까지 외의 자
 산에 투자 하는 경우
 나. (생 략)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2) (생 략)
 3)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가) (생 략)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의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의 경우: 100분의
 35
 다) 가) 및 나) 외의 경
 우: 100분의 30
 5) -----4)-----

 나. (현행과 같음)
 3. -----
 가. -----

 1)·2)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연구개발시설에 투자 하는 경우[다)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2호가목2)에 따 른 금액 다) (생 략) <u><신 설></u> 나. (생 략) ② ~ ⑤ (생 략)	----- -----다) 및 라)----- ----- ----- 다) (현행과 같음) 라) <u>인공지능 데이터센 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 는 경우: 제2호가목4) 에 따른 금액</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